

# 연구전임교원 임용 규정

제정 2022. 02. 0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연구전임교원의 자격 · 임용 · 신분 ·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연구전임교원이라 함은 대학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연구와 지원, 그리고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임용자격) 연구전임교원의 임용자격은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관리준칙을 준용한다.

제4조(임용절차) ① 연구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관리준칙의 전임교원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.

② 연구전임교원을 임용할 때는 별표1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용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용조건 등) ① 연구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직위는 조교수로 한다.

② 연구전임교원은 2년 단위로 계약 임용한다. 단, 재계약 심사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 및 9월 1일자 기준으로 하며, 신규임용 시기로 인하여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.

③ 연구전임교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 연구전임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임기 만료 통보)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구전임교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 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과 재계약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신청 서식과 함께 문서로 통지한다.

② 재계약 심사를 받고자 하는 연구전임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사를 임명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단, 기간 내 재계약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.

제7조(재계약 심사) ① 연구전임교원은 별표2 서식에 따라 교양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교원에 한하여 재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다. 교양대학장은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교육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별표3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재계약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추천서를 참고하여 연구, 강의, 교수자질 및 학교기여도 등을 별표4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.

-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별표4의 평정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기초로 심사하며,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에 재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다.
- ④ 총장은 재계약 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,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서를 작성한다.
- ⑤ 재계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교양대학장을 경유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, 교원인사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사 할 수 있다.

제8조(신분보장) ① 연구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 ·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  
② 연구전임교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복무) ① 연구전임교원은 총장이 지정하는 연구, 강의, 교육사업 기획 및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,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한다.  
② 연구전임교원의 연간 책임시수는 6시간을 원칙으로 하되, 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  
③ 연구전임교원의 해외여행은 교원 해외여행 규정을 준용한다.  
④ 연구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, 제32조, 교수연구년제시행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 
⑤ 연구전임교원은 교내연구과제 공동연구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체 교수회와 학과 교수회에 각각 참여할 수 있다.  
⑥ 연구전임교원이 면직을 원할 경우 학기 시작 전에 교양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학기 도중에는 사임할 수 없다.  
⑦ 그 밖에 연구전임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관리준칙을 준용 한다.

## 부칙

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# 연구전임교원 임용계약서

상지대학교 총장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○○○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연구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의한 연구전임교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.

### 1. 임용기본사항

- 가. 직무구분 : 연구전임교원
- 나. 직위 : 조교수
- 다. 계약기간 : (0000년 00월 00일 ~ 0000년 00월, 00일)
- 라. 임용부서 : (교양대학)
- 마. 강의책임시간 : 연간 6시간(주당 3시간)(학부수업 기준)
- 바. 임무 : 연구, 강의, 교육사업 기획 및 수행

### 2. 처우

- 가. “을”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신규임용 시 1호봉부터 시작한다.
- 나. “을”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 될 경우 최초 임용 시의 계약기간을 경력에 포함한다.

### 3. 복무조건

- 가. “을”은 교육사업\*에 필요한 연구와 지원을 주로 담당하고, 학기당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한다.

\*교육사업이란 대학의 행정부서(교육연구처, 기획평가처, 학생행복처, 인재개발원 등)의 소관 사업으로서 교육과정이나 교수법의 개발 및 연구, 대학평가 대비, 구조개혁 분석 및 연구, 취/창업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, 학생상담 수행 및 연구 등의 사업을 말함

- 나. “을”은 계약기간 중 상지대학교의 교육이념과 전학정신을 존중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, 교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.

### 4. 재임용 계약

- 가. “을”은 계약기간 중 재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될 수 있다.
- 나. “갑”은 “을”的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만료 사실과 재계약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한다.
- 다. “을”은 계약기간 만료 사실 통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사를 “갑”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단, 계약기간 만료사실 통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
- 라. 재계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“을”은 심사결과 통보일부터 15일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, “갑”은 필요시 재심사를 실시한다.
- 마. “갑”과 “을”은 “을”에 대한 교육사업 주관 부서장의 심사의견서와 교양대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결정으로 재계약을 체결한다.
- 1) 이 경우 “을”의 강의평가 결과(학부기준)는 전임교원 중 상위 70% 이내이고, 임용기간 중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을 적용한 연구실적이 100점 이상이어야 한다.
  - 2) “을”의 재계약을 위한 교원인사위원회 평정점수는 평정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어야 한다.
- 바. 재계약 절차는 본교 교원인사규정 및 연구전임교원 임용규정을 준용한다.

## 5. 기타

- 가. “을”이 관계 법령,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및 상지대학교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“갑”은 교원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- 나. “을”의 임용근거가 되는 각종 증명서 및 실적물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“갑”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다. “을”이 면직을 원할 경우에는 학기 시작 전에 “사직서”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학기 도중에는 사임할 수 없다.
- 라.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전임교원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.
- 마.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“갑”과 “을”은 상기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하며,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.

20 . . .

“갑” 상지대학교총장 (직인)

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83(우산동)

“을” 성명 : (인)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### 〈별표-2〉

연구전입교원 재계약 추천서

## 재계약 대상자 인적사항

소 속		직 위				성 명		
최초임용일	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현      직 계약기간		~	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

교양대학장 추천의견서

※ 교수로서의 자질(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, 인간관계의 원만성) 항목을 필수적으로 기술

교양대학장

(인)

<별표-3>

### 연구전임교원 재계약 심사의견서

대상자	소속 : 직급 : 성명 :	최초 임용일	평가 부서장 (인)
		. . 부터 . . 까지	
구 분 영 역	항 목	의 견	
교육사업 기획 분야에 서의 기여도	교육사업 기획 실적과 성과		
교육사업 수행 분야에 서의 기여도	교육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		

<별표-4>

### 연구전임교원 재계약 심사평정표

평정 대상자	소속		최초 임용일	
	성명		평정기간	
평정영역 (점수)	평정항목		배점	취득점수
교육 (15)	① 수업개선 실적	5		
	② 강의평가	5		
	③ 교수법 개발 참여	5		
교육사업 연구 및 지원, 연구성과 (55)	④ 교육사업 기획 성과	25		
	⑤ 교육사업 수행 성과	20		
	⑥ 연구성과	10		
교수자질 및 학교기여도 (30)	⑦ 교수로서의 자질	10		
	⑧ 연구수행능력	10		
	⑨ 임용기간 학교기여도	5		
	⑩ 재계약 시 학교발전 기여 계획	5		
합계		100		
인사 위원회 위원평가 의견				
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(인)				

<별표-5>

## 연구전임교원 재계약 심사 평정 기준표

평정항목	평정기준																	
① 수업개선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임용기간 중 CQI보고서 제출과 강의개선 노력 항목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CQI보고서 제출기한 준수</li> </ul> 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모두 준수</th><th>1회 미준수</th><th>2회 미준수</th><th>3회 미준수</th><th>4회 미준수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점수</td><td>5</td><td>4</td><td>3</td><td>2</td><td>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			구분	모두 준수	1회 미준수	2회 미준수	3회 미준수	4회 미준수	점수	5	4	3	2	0
구분	모두 준수	1회 미준수	2회 미준수	3회 미준수	4회 미준수													
점수	5	4	3	2	0													
② 강의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임용기간 중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3개 학기 평균 강의평가 결과를 전임교원 전체 석차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영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상위 30% 이내</th><th>상위 40% 이내</th><th>상위 50% 이내</th><th>상위 60% 이내</th><th>상위 70% 이내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점수</td><td>5</td><td>4</td><td>3</td><td>2</td><td>1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			구분	상위 30% 이내	상위 40% 이내	상위 50% 이내	상위 60% 이내	상위 70% 이내	점수	5	4	3	2	1
구분	상위 30% 이내	상위 40% 이내	상위 50% 이내	상위 60% 이내	상위 70% 이내													
점수	5	4	3	2	1													
③ 교수법개발 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임용기간 중 교내에서 개최된 교수법특강, 강의촬영컨설팅 및 교육혁신 워크숍 등 교수법 및 강의개선을 위한 각종 특강 또는 워크숍 등에 참석한 실적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70%이상 참여</th><th>60% ~ 69% 참여</th><th>50% ~ 59% 참여</th><th>40% ~ 49% 참여</th><th>40%미만 참여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점수</td><td>5</td><td>4</td><td>3</td><td>2</td><td>1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※ 대상 특강 또는 워크숍은 각 행정부서에서 교내 게시판을 통하여 전체 교원에게 공지된 내용을 기초로 하고, 참석여부 확인은 참석자 서명부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부로 증빙하고 서명부가 없는 경우 주관한 행정부서장의 참석확인서로 증빙함</p>						구분	70%이상 참여	60% ~ 69% 참여	50% ~ 59% 참여	40% ~ 49% 참여	40%미만 참여	점수	5	4	3	2	1
구분	70%이상 참여	60% ~ 69% 참여	50% ~ 59% 참여	40% ~ 49% 참여	40%미만 참여													
점수	5	4	3	2	1													
④ 교육사업 기획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임용기간 중 교육사업* 기획성과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. (*교육사업이란 대학의 행정부서(교육연구처, 기획평가처, 학생행복처, 인재개발원 등)의 소관사업으로서 교육과정이나 교수법의 개발 및 연구, 대학평가 대비, 구조개혁 분석 및 연구, 취/창업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, 학생상담 수행 및 연구 등의 사업을 말함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기획한 교육사업 수(※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건수로 평가. 1건당 1점으로 하고, 20점을 상한으로 함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10건 이상</th><th>7~9건</th><th>4~6건</th><th>1~3건</th><th>0건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점수</td><td>20</td><td>15</td><td>10</td><td>5</td><td>0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기획한 교육사업의 정책반영 건수(※ 교육부사업 수주건수</li> </ul> </li> </ul>						구분	10건 이상	7~9건	4~6건	1~3건	0건	점수	20	15	10	5	0
구분	10건 이상	7~9건	4~6건	1~3건	0건													
점수	20	15	10	5	0													

	<p>또는 교내 교육사업 제도화 건수, 기타 이에 준하는 실적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<td>3건 이상</td><td>2건</td><td>1건</td><td>0건</td></tr> <tr> <td>점 수</td><td>5</td><td>3</td><td>1</td><td>0</td></tr> </table> <p>▶ 단, 취/창업 교육과정의 정책반영 평가는 다음 기준에 따름 (※ 정부기관사업 수주건수 또는 교내 교육사업 제도화 건수, 기타 이에 준하는 실적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<td>5건 이상</td><td>3건</td><td>1건</td><td>0건</td></tr> <tr> <td>점 수</td><td>5</td><td>3</td><td>1</td><td>0</td></tr> </table> <p>※ 취/창업 교육과정은 교과 및 비교과를 모두 포함</p>	구 분	3건 이상	2건	1건	0건	점 수	5	3	1	0	구 분	5건 이상	3건	1건	0건	점 수	5	3	1	0
구 분	3건 이상	2건	1건	0건																	
점 수	5	3	1	0																	
구 분	5건 이상	3건	1건	0건																	
점 수	5	3	1	0																	
평정항목	평정기준																				
⑤ 교육사업 수행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임용기간 중 교육사업 수행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교육사업 수행 건수(결과보고서 또는 환류보고서,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서로서 제도화되어 있는 사업수행 실적을 의미함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<td>10건 이상</td><td>7~9건</td><td>4~6건</td><td>1~3건</td><td>0건</td></tr> <tr> <td>점 수</td><td>20</td><td>15</td><td>10</td><td>5</td><td>0</td>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취/창업 교육 수행성과의 경우, 취/창업 교과 및 비교과 수행 건수를 의미함(취/창업 교육의 설계, 수행, 성과를 결과보고서 또는 환류보고서의 형태로 평가할 수 있는 실적을 의미함, 취/창업 동아리의 경우에는 지도 팀수를 건수로 평가)</li> </ul> </li> </ul>	구 분	10건 이상	7~9건	4~6건	1~3건	0건	점 수	20	15	10	5	0								
구 분	10건 이상	7~9건	4~6건	1~3건	0건																
점 수	20	15	10	5	0																
⑥ 연구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임용기간 중 수행한 연구성과를 다음과 같이 반영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연구업적(저서 및 논문, 발표 등으로 한정함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<td>300점 이상</td><td>300점 미만 200점 이상</td><td>200점 미만 100점 이상</td><td>100점 미만</td></tr> <tr> <td>점 수</td><td>10</td><td>8</td><td>6</td><td>0</td></tr> </table> </li> </ul>	구 분	300점 이상	300점 미만 200점 이상	200점 미만 100점 이상	100점 미만	점 수	10	8	6	0										
구 분	300점 이상	300점 미만 200점 이상	200점 미만 100점 이상	100점 미만																	
점 수	10	8	6	0																	
⑦ 교수로서의 자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교육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의 심사의견서와 교양대학장의 추천서, 그리고 임용기간 중 상별 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교수의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평가함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<td>매우 우수</td><td>우수</td><td>보통</td><td>미흡</td><td>매우 미흡</td></tr> <tr> <td>점 수</td><td>10</td><td>8</td><td>6</td><td>4</td><td>2</td></tr> </table> <p>※ 참고사항</p>	구 분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점 수	10	8	6	4	2								
구 분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															
점 수	10	8	6	4	2														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사장, 총장 및 외부 공공기관장의 표창</li> <li>- 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학회 및 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상을 수상한 경우</li> <li>- 대학 내 수상</li> <li>- 주의, 경고 및 징계</li> <li>-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 등</li> </ul>												
⑧ 연구수행 능력	<p>■ 재계약 대상자가 임용기간 중 연구 또는 각종 학문적 활동을 통하여 제고한 연구역량을 토대로 인사위원이 평가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매우 우수</th><th>우수</th><th>보통</th><th>미흡</th><th>매우 미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점 수</td><td>10</td><td>8</td><td>6</td><td>4</td><td>2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연구역량은 재계약 심사 신청 시 재계약 대상자가 본인의 임용기간 내 연구업적(교육사업 연구 포함) 및 학문적 활동을 문서로 제출하고, 인사위원은 이를 근거로 평정함</p>	구 분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점 수	10	8	6	4	2
구 분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							
점 수	10	8	6	4	2								
평 정 항 목	평 정 기 준												
⑨ 임용기간 학교기여도	<p>■ 재계약 대상자가 임용기간 중 대내외 활동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사항 및 재계약 시 학교발전을 위한 계획을 기초로 인사위원이 평가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매우 우수</th><th>우수</th><th>보통</th><th>미흡</th><th>매우 미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점 수</td><td>5</td><td>4</td><td>3</td><td>2</td><td>1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임용기간 학교기여도는 재임용 신청 시 재계약 대상자가 본인의 임용기간 내 학교기여도를 문서로 제출하고, 인사위원은 이를 근거로 평정함</p>	구 분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점 수	5	4	3	2	1
구 분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							
점 수	5	4	3	2	1								
⑩ 재계약시 발전 기여 계획	<p>■ 재계약 대상자가 제시한 학교발전에 기여 계획을 기초로 인사위원이 평가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매우 우수</th><th>우수</th><th>보통</th><th>미흡</th><th>매우 미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점 수</td><td>5</td><td>4</td><td>3</td><td>2</td><td>1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재계약 시 발전계획은 재계약 신청 시 대상자가 재계약 시 발전계획을 문서로 제출하고, 인사위원은 이를 근거로 평정함</p>	구 분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점 수	5	4	3	2	1
구 분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							
점 수	5	4	3	2	1								